

中國人の「法意識」調査研究

- 北京地域을 中心으로 -

董璠輿 著*
李權實 譯**

차 례

I. 서 문

II. 조사의 개요

III. 본 조사의 설문지 구성

IV. 중국인 법의식의 기본구조

V. 몇가지 결론

* 中國 政法大學 教授

** 中國 中央財政金融學校(大學) 副教授

I. 서 문

中國人的 法意識 상황에 대하여 오늘까지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일본인의 법의식》·《현대 일본인의 법의식》(각각 일본 문화회의의 두 차례 조사)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법의식조사를 하여 보려는 욕심이 생겨났다. 중국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는 몇년 동안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과제이다. 전국적 조사가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력·물력·인력의 제한으로 현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본인은 1991년부터 북경지역에서 중국인의 법의식조사를 계획하고, 상기의 일본조사처럼 하여 보기로 하였다. 일본의 조사는 전국범위가 아니라 도쿄도 30Km²이내의 구역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우리의 조사범위는 원래 일본의 것보다 넓었으나 표본수는 일본보다 적었다. 이 계획은 북경시 사회과학연구《8·5》의 중점과제로 1992년에 비준을 받아 1995년내로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기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수준이 전국의 평균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시외구역 농민의 숫자가 불과 35인으로서 총 표본수의 4.52%만을 차지할 뿐이다. 전국 총 인구의 6%정도를 점하는 소수민족의 성향은 더구나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북경은 중국의 한 도시로서 일본의 도쿄처럼 그 대표성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본 조사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였다. 중국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조사가 없었고, 아직도 조사의향이 보이지 않으며, 법학계에서도 그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법의식의 어느 한 면만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는 많으나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실증주의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일찍부터 일본의 카와지마 다케요시(川島武宜)의 저작과 다량의 관계저서, 논문, 특히 《현대 일본인의 법의식》과 같은 조사연구에 관한 저작을 주시해왔는 바, 우리의 조사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일본의 이 영역의 귀중한 경험을 우리의 조사연구에 도입하려고 필자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6월까지 1년간 일본을 방문하여 법의식이론, 조사의 기법, 중·일간의 몇 가지 비교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였다. 1992년에는 일본의 전문지 《法學家》(JURIST) 9월호에 실린 한국의 법의식조사연구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조사가 독창적인 특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앞섰으며 본보기가 된다고 느꼈다.

중국은 근래에 여러가지 사회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도 창설되었다. 사회의식·정치의식 조사도 있으나 그 횟수가 아직 적으며 심지어 매우 희소한 형편이다. 과학적·체계적 실증주의 연구는 논할 바가 못된다. 법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는 원래 1994년 12월에 진행하려다가 예산관계로 소규모적인 사전조사만 하였고, 정식조사는 금년 2월로 미루어졌다.

이 조사는 중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정식조사이므로 법학계의 하나의大事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앞으로 법의식연구에 기초적인 수치를 제공하여 주며 더불어立法機關·司法機關의 사업에 참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또한 중요한 의미를 들 수 있다. 입법기관의 입법활동은 비록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법의식 상태도 또한 마땅히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법집행기관은 입법기관보다 쉽게 사람들의 법의식에 접근할 수 있으나 보통 어떤 통계이거나 분석에 의존할 뿐 법의식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살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 각종 행정집권·법제선전과 법학교육에도 의의가 크다. 국가간의 비교, 예를 들면, 中·韓 법의식의 비교, 中·日 법의식의 비교도 아주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일본은 사회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동양문화”를 기초로 하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법의식의 동일점과 차이점의 연구는 국가간의 교류를 통하여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12억 인구의 법의식상황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인구의 1/4을 점하는 중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해명은 세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중국인의 법의식상황을 초보적으로 이해하며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조사의 대상

북경시 18세 이상의 남녀공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한국의 경우 모두 20세 이상인 것과는 다르다. 이 연령에 달하면 중국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조사의 구역

지금 북경시에는 직할구가 10개, 직할현이 8개 있으며, 총인구 10,487,445명이다. 본 조사의 표본지역은 기정구역 8개구(시외구역 2개구에는 약간의 농업인구가 있음)로서 총인구는 600만명이다.

4. 표본수

1,500

5. 할당비례

1 : 4,000

6. 조사방식

호별방문에 따른 자기기입식을 위주로, 소수 불편자의 경우는 청취법이나 조사원 기입의 방식을 병행하였다.

7. 조사기간

1995년 2월 15일 ~ 24일 (10일간)

8. 조사의 실시

중국사회조사연구소(中國北京市城區張自忠路3號所長李冬民)

9. 결과회수

- (1) 유효회수(비율) 1,438명 (95.86%)
(2) 회수불능(비율) 62명 (4.14%)
(원인 : 임시출장, 질병발생, 거절 등)

10. 회답에 사용된 시간

가장 짧은 시간 13분,
가장 오랜 시간 42분,
평균 약 21분.

응답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구성

단위 : 명 (%)

항 목	특 성	구 分									
		분 포									
성 별	남 자				여 자						
	724 (50.35)				714 (49.65)						
직 업	사무직	전 문 관리직	학 생	지식인	노동자	농 민	군 인	주 부	기 타		
	266 (18.50)	233 (16.20)	179 (12.45)	128 (8.55)	458 (32.20)	65 (4.52)	31 (2.16)	26 (1.81)	52 (3.62)		
연 령	18 ~ 30		31 ~ 40		41 ~ 50		51 ~ 60		60 이상		
	597(41.52)		459(31.92)		201(13.98)		124(8.62)		57(3.96)		
학 력	국 졸		초 졸		고 졸		대 전		대 학		
	56(3.89)		267(18.57)		525(36.51)		303(21.07)		287(19.96)		

항 목	구 分					
	분 포					
개 인	300원 미만	500원 미만	700원 미만	900원 미만	1000원 미만	1000원 이상
소 득	344(23.92)	534(37.13)	332(23.09)	115(8.00)	71(4.94)	42(2.92)
소 속	공산당 공청단		민 주 당 파		기 타	
	578 (40.19)		33 (2.29)		827 (57.51)	

III. 본 조사의 설문지 구성

본 조사는 표본수 뿐만 아니라 설문에서도 여러 조건의 제약을 받았다. 한·일 양국의 설문은 모두 40문 이상이었지만, 우리는 30문으로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 30문은 대체로 아래의 5조로 나뉘어진다.

첫째, 중국인의 기본가치관에 대한 조사이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에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권리(자유포함)와 공중이익이 모순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남녀가 반드시 동등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죄수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보십니까” 등 9개 조사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둘째, 법에 관한 공민의 지식, 인상 및 평가에 대한 조사이다. 예를 들면, “신문에 실린 새로 통과된 법률을 읽어 보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태도” 등 2개 설문도 제기하였다.

셋째, 공민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로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법·제도와 수단, 예를 들면,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될 수 있고 서로간의 화해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사회분쟁해결에는 법적 해결과 사적 해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적해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귀하의 가족중 범죄혐의자가 있다면 자수를 권고하시겠습니까”, “귀하는 소송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상점에서 산 상품이 가짜나 위조품일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십니까” 등을 제기하였다.

넷째,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공안·검찰·심판기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로, 예를 들면, “위의 기관들이 법을 행할 때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한 4쌍의 사법관중 각 쌍의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등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현행법에 대한 인식의 조사로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에 대한 평가로서 “당신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통과된 법들이 민심에 맞으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다.

IV. 중국인 법의식의 기본구조

“사람의 의식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사회적 존재가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마르크스).” 자신이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기에 자신이 사고하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것은 자연(사람두뇌의 기능)의 산물이며 더욱이 사회의 산물이다. 의식은 물질에 대하여 제2성적이나 소극적이 아니어서 물질에 대한 반영은 능동적이다.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현실에서 개념·사상·계획 등을 끌어내어 자기의 행동을 지도하게 하며 행동에 목적·방향성이 있게 한다. 때문에 의식은 물질의 발전과정에 촉진적이거나 저해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의 사회의식에는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의식·법의식·민족의식·종교의식 등이 있다. 법의식은 사회의식의 하나로서 법의 현실이 사람의 두뇌에 반영된 것이다.

객관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감성인식 단계와 이성인식 단계로 나누어진다(모택동). 마찬가지로 사람의 법의식도 대체로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는 사람들의 법률심리 상태(대체적으로 일본학자들이 말하는 법률지식·법률의견·법에 대한 태도 등이 법의식에 해당함(1))이다. 제2단계는 사람들의 법률관념(일본학자들이 말하는 관념형태의 법에 대한 법의식에 해당함(2))¹⁾이다.

1) 日本社會學會, 法意識の研究(第34~35號), 14~15面.

사람들의 법률심리상태는 법률현상에 대한 감각·인상·체험 등으로서 법의식의 초급단계에 속한다. 그것은 법률현상에 대한 인식이 표면적이고 직관적인 것에 제한되었으므로 아직 이성인식의 높이에는 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탐오·절도·뇌물행위를 보고 분개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법·제도를 강화하는데 유리한 적극적인 심리상태다. 반면에 사회재부를 탐내거나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정서는 사회주의의 법·제도를 파괴하는 소극적인 법심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관념은 법률심리상태를 토대로 하여 생산되는 것이다. 이는 보다 높은 이성인식의 단계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법심리상태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는 법률의 본질 및 작용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요구와 태도, 그리고 사람들의 법행위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법관념은 법의식의 고급단계로서 법의식 가운데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작용을 한다. 법의식의 초급단계는 그 변화가 빠르지만 고급단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진다.

법의식은 법심리와 법관념의 총화이다. 법의식은 다른 사회의식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것들은 모두 사회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회존재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둘째, 이것들은 모두 사회존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반작용을 한다. 셋째, 이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존재의 발전에 뒤떨어진다. 넷째, 이것들은 발전상에서 역사적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급사회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법의식은 비통일적이면서 착취계급의 법의식과 피착취계급의 법의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1. 신중국의 법률은 “偽法統”을 폐지하고 해방구의 법률원칙을 계승발전하여 이루어졌다.

신중국의 법률은 구중국의 법률에 대하여 계승·연속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단절·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위법통폐지”²⁾를 강조하고 해방구의 법률원칙을 계승·발전한 기초위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유익한 경험(주로 소련의

2) 張晋藩, 中國憲法史略, 北京出版社, 1979, 236面.

경험)을 받아들였다.

건국초기에는 법제건설이나 법학연구에서 전전한 발전이 있었다. 그 후 “文化大革命”이 터지고 “10년동란”의 상태에 있다 보니 법제건설과 법학연구는 모두 엄중한 피해를 입었다. 1978년 당의 11기 3중전회가 열린 후에야 법제건설과 법학연구는 비로서 새로운 번영의 역사시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82년에 채택한 헌법은 서언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똑똑히 지적하였다. 새 헌법과 그 전후에 제정된 법률로 인하여 법학이론은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으며 사람들의 법의식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과 법학이론은 법의식의 “응축형태”라 말할 수 있으며 법의식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법이라고 할 때 중국인이 우선 가지는 인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주적이다.	253명	17.59%
② 계급적이다. 엄격하다	299명	20.79%
③ 공평하다.	499명	34.70%
④ 편파적이다.	109명	7.58%
⑤ 대체로 공평하다.	276명	19.33%

여기에서 법의 계급성 문제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법의 실질이란 바로 통치계급의 의지의 구현임을 입증한다. 비록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었지만 법 자체는 의연히 통치계급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지 피통치계급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 국내에 법의 계급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³⁾ 다수의 학자들은 법의 계급성과 사회성의 통일을 주장한다. 즉, 법의 계급성이 법의 사회성에 내포되어 있고 법의 사회성은 계급성의 제약을 받는다. 양자는 서로 일치되는 것이다.

최초의 인상이 “계급적이다”가 20.97%이고, “민주적이다”와 “공평하다”는 합 52.29%인데 계급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최초의 인상이 다를 뿐이다. “공평하다”는 34.70%와 “민주적이다”라는 17.59%, 모두 한국의 경우

3) 法學理論要更新 - 記張友漁和張宗厚的一席讀, 裁1986年3月31日, 中國人民日報.

(1991년 조사를 가리킴. 아래도 같음.)보다 높다.

이 밖에 중국인이 일단 법이라 할 때는 성문법과 제정법에 제한되어 있어 판례법과 습관법(관습법)은 보통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점도 또한 국외와는 다르다.

2. “제 것이 아니면 조금도 텁내지 않는다”(苟非吾所有，則不取毫厘)는 재래의 소유관념의 심각한 변화이다.

상기한 통치계급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라는 것은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좀 더 넓게 말하여 같은 의지행위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이 통치계급의 의지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결정론이지 의지결정론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으로 통치지위에 있는 계급이 자기의 수중에 장악한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자기 계급의 물질생활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급적 의지를 법의 형식으로 구현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통치계급의 의지, 국가의 의지는 법본질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표층은 국가의 의지(마치 국민공유의 의사)이고, 중간층은 통치계급의 의지(국민의 의사의 실질을 표명함)이다. 이것은 그 어떤 관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층은 물질생활조건에 대한 통치계급의 객관적 수요이다. 물론 이것은 그 내재적인 필연적 관계로부터 말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어떤 우연한 인소의 작용과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제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제를 토대로 한다. 근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집체경제·사인경제·개체경제가 정도는 다르나 활기있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경제가 여전히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유제관계는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쓰여 있다. “사회주의 공동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공동재산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제12조).” “국가는 개인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제11조).”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수입·저금·가옥 기타 합법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한다(제13조).”

중국인은 공동재산의 침점에 일찍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재산소유권을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텁내지 않는다”는 재래의 관념을 지키고 있다. 남의 물건을 차지하는

것은 부당한 절도행위이며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보지만, 일단 공동재산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도리어 이런 관념이 강렬하지 않다.

조사의 설문에 “공가(집체)의 30원어치의 물건을 차지한 것이 빨각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① 원 물건을 돌려 준다.	528명	36.78%
② 돈으로 변상하는 것이 옳다.	571명	39.71%
③ 자기도 한몫 차지한다.	90명	6.28%
④ 교양만 하고 내버려 둔다.	158명	10.99%
⑤ 기타	91명	6.38%

그러나 일단 “다른 사람”의 30원어치의 물건을 차지하였을 때는 ①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50.28%를 차지하며, 공가물건의 경우보다 13.50%가 높다. ②교양만 하고 그만 내버려 둔다는 주장이 8.28%로 공가물건의 경우보다 2.71% 낮다. 대부분이 그저 교양만해서는 안되며 남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신중국이 정립된 직후 도시에서는 “3反”(탐오·낭비·관료주의 반대)운동과 “5反”(①뇌물을 쓰는 것 ②탈세하는 것 ③국가재산을 훔치는 것 ④노력을 덜 들이고 자재를 떼어 먹는 것 ⑤국가의 경제정보를 훔치는 것 등 다섯가지 반대)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는데, 그 실질적인 목적이 바로 공동재산 소유권을 수호하고 전체 인민 가운데서 “공동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법의식을 세우는 데 있었다. 그 후 60년대 초반에 주로 농촌에서 “4청”(四清: 정치·경제·조직·사상의 4항을 청백히 하는 것)운동을 벌였는데, 그 목적은 50년대의 “3반·5반”과 같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 당시에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소유권 관념은 변화가 일어나 집체의 물건을 공짜로 얻어 먹어야 된다는 관념이 자라났다. 어떤 지방에서는 공공재물을 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 있다. 상기 조사의 백분율도 이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대체로 법관념이 회박해졌고 각성이 낮은 데서 기인된다는 견해는 정확한 것이다. 반면에 “사적 소유는 인간의 천성”이라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일본에서 고찰할 때, 필자는 미국인의 개인소유 관념이 일본인보다 강하며 또

한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 사람들은 자그마한 빈터만 보면 그 둘레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친 다음 “개인 소유지 출입금지”라는 패를 걷다. 운동장이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런 “사유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인근에 있는 한 상점이 집수리에 쓸 많은 상등 재목을 실어왔다. 사람이 지키지 않는 집머리에 재목을 쌓고 그저 널판자로 덮어 놓았다. 십여일이 지나도 분실되는 일이 없었다. 그 당시 필자는 일본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주 높다고 느꼈다.

그 후 카와시마 다케요시의 저작인 “일본인의 법의식”에서 계시를 받고 필자는 이 새끼줄과 널판지가 “공용지 · 공유물이 아니고 주인이 있으며 주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타인은 주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며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카와시마 교수는 또한 자기가 체험한 한가지 일을 예로 들었다. 전쟁시기 폭격에 의한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옷가지와 책들을 홋가이도(北海道)의 친척집에 맡겨 두었다가 전쟁후에 찾으러 갔다. 옷은 이미 입다 보니 없어졌으나 친척은 미안한 표시가 전혀 없었다. 카와시마 교수는 이를 법의식의 각도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옷은 이미 자신의 점유와 사용범위를 떠났기에 친척도 “타인의 소유”라는 의식이 희박해졌다고 분석하였다.

이전에 중국에도 “빌어온 물건도 삼년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역시 같은 이치이다. 3년이나 점유를 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공재들과 타인재물은 모두 무주물이 아니고 유주물이다. 그러나 공공재물의 점유는 추상적이고 실제적이 못되는 것 같고, 타인재물의 점유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의식상의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다.

3. 법지식을 알고 있는 정황은 좋으며 사회생활의 준칙을 창성한다.

중국의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줄곧 학습제도를 견지해 왔다. 주로 당의 방침과 정책을 학습하는데, 그 중에는 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오늘에 와서는 지난날과 조금 달라졌지만 이런 학습을 지금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때문에 새 법이 공표될 때마다 “자세히 본다”는 사람이 9.18%, “대충 본다”는 사람이 61.47%이다. 양자의 합계가 70.6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한국은 양자 합계가 80.80%, 중국보다 10%가 높다.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는 사람은

5.29%이니 한국의 4.70%보다 조금 높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주요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1,228명(85.40%)이 국가의 근본제도를 규정하였다고 정확히 대답하였으니 그 비율은 더 높다. 이는 두차례의 법지식 보급⁴⁾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설명한다. 물론 법지식의 장악정도는 이상적이 못되며 아직도 8%를 점하는 사람이 헌법이란 “납세액을 규정”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심지어 1.53%의 사람들은 “결혼등록수속을 규정”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총장에 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라는 나라의 주인되는 권리라는 다소 알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아래의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① 부모에 효성하는 일	368명	25.59%
② 은혜를 갚는 일	42명	2.92%
③ 권리와 자유의 존중	766명	58.27%
④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187명	13.00%
⑤ 기타	75명	5.22%

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얼마간 강해졌고 이런 의식이 압도적 우세를 점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다. 근래 선전여론계에서는 사회상의 불효 행위를 자주 폭로하고 강력히 규탄하여 왔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거의 26%에 접근하게 되었다. 친구교제의 중시도는 젊은층 일수록 높다. 18~40세가 75.40%, 40~50세가 20.85%, 50세 이상은 비율이 더 낮다.

또한 성별(남:여)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은 46.47 : 53.53
- ②는 38.10 : 69.90
- ③은 52.35 : 47.65
- ④는 52.94 : 47.06

4) “1·5” 법지식 보급은 첫번째 법지식 보급 5개년(1985~1990) 계획을 말하며, “2·5” 법지식 보급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4년이 되었다.

⑤는 49.33 : 50.67

③④는 남성쪽이 여성보다 높으며 ①②는 여성편이 남성보다 높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학술계에서는 양자의 연관을 주장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통일적이다.” 이런 “통일론”은 늘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시기에 따라 그 치중하는 면이 다르다. 대체로 50~60년대에는 “공민은 반드시 성실히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편중하였다. 이렇게 하여야만 권리의 향유를 위해 더욱 많은 물질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80년대 후로는 법 자체는 공민의 권리를 수호하여야 하며 모든 특권은 부정하여야 하며,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측면은 권리인 것 같다.

“개인의 권리(자유 포함)와 공중의 이익이 모순될 때 어느 쪽을 우선하겠습니까”라는 설문에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① 개인권리 우선	265명	18.43%
② 공중이익 우선	931명	64.74%
③ 기타	242명	16.88%

이 문제는 목전의 중국인의 법의식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두가지 대립되는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는 ①을 주장하고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는 ②를 주장한다. 절대 다수의 중국사람은 헌법에 명기한 준칙에 찬성하고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사회·집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제51조)

일본의 경우, 개인의 권리는 부득이 공중이익을 다소 희생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1971년 제1차 조사에서는 42.00%를 점하였는데 1976년 제2차 조사에서는 26.10%로 줄었다.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개인의 권리를 다소 희생해야 한다는 사람은 48.40%로부터 57.90%로 증가되었다. 공중이익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되 남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사람은 1978년 2월의 67.00%로부터 5년후인 1983년 9월에는 76.00%로 도리어 많이 올라갔다.⁵⁾

5) 田中成明, “일본인의 법의식과 그 연구의 현상태”, 法社會學, 1983, 35面.

4. 평등권과 중국의 현실

“공민은 법률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남녀평등도 그 중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헌법의 제48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은 정치·경제·문화·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혼인법에는 시종일관하게 남녀 평등의 정신이 관철되어 있다. 일찌기 건국 초기로부터 정무원에서는 노동자모집 등에서 “여성차별을 엄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지금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더 많이 제정되었고 여러가지 법적 보호조치도 마련되었다. 남녀평등의 실현에서 거둔 성과는 실로 크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여성차별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물음에는

① 정치참여	232	16.13%
② 사회적 지위	311	21.63%
③ 진학 및 취업	517	35.95%
④ 가정에서의 역할	116	8.07%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③으로 1/3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시장 기능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②로 2할을 점하며 세번째가 ①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일본에서는 사회에 진출하려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회사의 직원·고용인·역부이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여성은 아주 드물다. 지금 우리나라 인민대표중의 여성비율은 21.03%이니 개별적인 소수는 아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도 여성이 14.0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 전국정치협상회의에는 1명이 부주석, 국무원에는 1명의 국무위원, 19명의 부장·부부장(장관·차관에 해당함)이 있다. 그리고 30개의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도 23명의 여성이 당·정기관에서 지도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멀지않아 이 비율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성차별을 극복하려면 소홀하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여성 중 대학졸업생이 4.62%밖에 되지 않으며, 반면에 전국의 문맹중 여성이 70.0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북경시 사법기관도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검찰부문에 여성 검찰관이 445명이 있는데, 총인수의 27.00%를 차지하며 그중 24명이 각급 검찰원에서 정직·부직의 검찰장과 처장 직무를 맡고 있다.

“시집간 딸도 다른 형제들과 같은 재산상속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58.02%이고, 원칙을 더 구체화하여 “정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31.92%로서 한국의 0.60%의 비율보다 많이 높다. 현실적으로 평등상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여성 차별 사상이다. 또한 이것은 권리와 의무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관련된다. 31.92%의 사람은 “부양의무를 진 정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시 동등한 상속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5. 준법정형과 그 분포상태

법제에 대한 선전과 교육은 사회주의적 법률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였고 정확한 태도를 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로 누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간부	210	14.60%
② 장사하는 사람	31	2.16%
③ 지식인	377	26.22%
④ 노동자	185	10.87%
⑤ 농민	89	6.19%
⑥ 해방군	455	31.64%
⑦ 기타	91	6.33%

위의 순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배열한 것이다. 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61.80%)·기업가(15.60%)·공무원(11.00%)·대학생(2.80%)·지식인(2.40%)·근로자(1.20%)순이었다. 만약 법을 잘 지키는 순서로 보면 뒤로부터 앞으로 배열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에서 설명하다시피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중국에서는 해방군이고, 한국에서는 근로자(중국의 ④+⑤에 해당함)이다. 제2위는 지식인으로 양국이 같다. 중국의 제3위는 국가간부이고(한국의 경우는 제4위), 제4위는 노동자, 제5위는 농민, 제일 마지막은 상인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급단계의 현실과 관련되며, 10년 전과 비교할 때 실로 큰 변화이다.

6. 어간 화해의 “적당”과 “부당”

중국인의 법의식은 서양과는 다르다. 일단 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의무”를 본위로 하고 “권리”수호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实은 편파적이어서는 안된다.

구중국의 백성들은 법원을 멀리하고 살았다. 자기의 권리가 엄중한 침해를 받았더라도 웬만해서는 법원을 찾지 않았다. 그때의 속담에 “관청의 문은 열렸어도 돈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衙門朝南開, 有理無錢莫進來).” “아사(餓死)하여도 도둑질은 하지 말고 원사(冤死)하여도 법에 고하지는 말라(窮死別作賊, 寸死別告狀)는 말이 있다.” 이것은 법원의 성격과 제도상의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해방이후 이러한 원인은 없어졌으나 제도상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카와시마 교수는 이런 현상을 “권리의식 결핍”이라 하였다. 중국이나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유가사상의 “이화위귀(以和爲貴)”의 영향과 소송체계가 아직 불비한 사정과도 관련된다.

“귀하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를 입었을 때 당신은 기소하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 | | | |
|---------------|------|--------|
| ① 즉석에서 생각한다 | 407명 | 28.30% |
| ② 어떤 때에는 생각한다 | 703명 | 48.89% |
| ③ 별로 생각지 않는다 | 214명 | 14.88% |

일본의 1978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①은 11.10%, ②는 23.70% 모두 중국보

다 낫다. 그러나 ③은 60.60%로서 중국보다 많이 높다.⁶⁾ 여기에서 중국인의 권리주장이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간의 화해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① 판결	172	11.96%
② 화해	1,266	88.04%

여기에서 말하는 화해는 법원외의 화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의 민사심판 정형을 살펴보면 1993년에 전국 각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1심 민사건은 도합 2,089,257건으로 전국이래 제일 많은 해이며, 1992년에 비하여 7.21%가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혼인분쟁이 제일 많았고 채권·채무분쟁이 30.60%로 제2위를 점했는데, 1992년보다 3.86%가 많다. 그런데 상속권에 관한 안건은 1992년에 비하여 5.66%가 줄었다. 1991년에 심결한 1심 민사건은 2,091,651건(전해의 미결을 포함)이며 화해심결이 1,224,060건으로 총수의 58.52%를 점하고 판결심결이 23.28%⁷⁾를 점하였다.

법적 화해는 지난날 특히 혁명근거지의 민사분쟁해결에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오늘에 와서도 그 적극적인 작용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적 원칙을 떠나 당사자가 자원하는 것도 아닌 경우, 너무 “서로의 양해와 양보”를 강조하고 화해성립의 수량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소극적 영향을 가져오게 되며 당사자(어느 편이든)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화해의 성립은 우연적인 요인의 작용이 크다. 성공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신문지상에 법적 화해의 “열가지 방법”이라든가, 기타 “경험”들을 소개하는 등 정책적 추진의 결과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日本文化會議, 現代日本人의 法意識, 1982, 104面.

7) 中國法律年鑑, 1994, 1028面, 〈表3〉.

7. 자기보호 의식이 약하고 너무 너그러우며 상품품질에 관한 의식이 약하다.

상기의 권리의식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도 반영된다. 그 주요한 표현으로 자기보호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짜상품·위조품·불량품”을 샀다가 입은 손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국소비자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보호를 요구하는 자가 0.50%도 못되며 만회한 경제손실은 금액이 적지 않지만 소비자 전체가 받은 손실에 비하면 너무도 적다.

“귀하는 상점에서 사온 물건이 가짜나 위조품인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① 이미 샀으니 별 수 없다.	354명	24.62%
② 끝까지 따져서 바꾸어 온다.	676명	47.01%
③ 소비자 협회에 고발한다.	316명	21.97%
④ 법원에 신고해 처리한다	18명	0.90%
⑤ 기타	79명	5.49%

①은 한국의 경우보다 높고 ②·③의 비율은 한국보다 낮다. ①과 같이 처리하는 원인은 그저 “교훈으로 생각하고 다음 번에는 주의하자”라는 심리상태에 있다고 하겠지만 중국인의 너그러움과도 많이 관련된다. ①중에는 남자가 여성보다 많아 각각 54.11%와 45.89%, 문화정도로 보면 고졸비율이 대졸보다 많다. 소득으로 보면 고소득자가 아니라 월 수입이 대체로 300~500원밖에 안되는 저소득자가 56.22%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8. 범죄 후의 자수는 경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중국의 형사정책은 종래 자수를 지향하여 왔다. 자수여부는 양형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중국 형법 제3조에는 자수에 관한 전문규정이 있다. 일반 원칙은 무릇 자수한 자는 경한 처벌을 받는다.

설문중의 “귀하는 가족중에 범죄혐의자가 있다면 자수를 권고하시겠습니까”의

물음에는

① 권고한다	787명	54.73%
② 혹시 권고 할지도 모른다	383명	26.63%
③ 권고하지 않는다	113명	7.86%
④ 기타	155명	10.78%

권고여부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대로 법에 대한 신뢰정도를 설명한다. ①은 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며, ②는 혹시 권고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니 여러가지 조건이 붙을 것이다. ③이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①은 일본의 경우(1978년의 조사에 의하면 69.80%)보다 낮으며, ②는 일본의 23.40%보다 높고, ③도 일본의 3.90%보다 높다.

9. 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하며 기타 범죄행위도 소홀이 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반부패투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규모가 크고 중대한 안건을 많이 조사하여 판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서와 행정부문의 불량한 풍기를 시정하고 지도간부들의 청렴자율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전국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지도간부의 청렴자율과 관련되는 300여건의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국적인 현·처급이상 간부 스스로의 적발에서 14,000명에게서 관계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⁸⁾ 규모가 크고 중대한 안건들이 많이 드러나 단계적 성과를 거둔 반면에, 잠재하고 있는 부패한 현상들은 아직도 만연되고 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은 아직도 불만이 많으며 부패를 없애라는 호소는 여전히 강하다.

“귀하는 지금 가장 시급히 책별하여야 할 범죄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물음에는

① 탈세	179명	12.31%
② 부정부패	655명	45.55%

8) 中國 法制日報, 1995. 1.23, 2面.

③ 공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것	161명	11.20%
④ 공해사범	124명	8.62%
⑤ 조직폭력배	276명	19.33%
⑥ 기타	43명	2.99%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②의 부정부패에 대한 책벌로서 두드러진 지위를 점한다. ②는 한국의 경우, 56.00%로 중국보다 10%나 더 높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 문제가 엄중하지 않다거나 대중의 의견이 적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엄히 책벌하여야 할 범죄가 많아 비율이 분산되었을 뿐이다. 둘째, ⑤의 조직폭력 배의 경우, 한국이 21.30%로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제3위를 점하는 탈세는 한국의 경우, 겨우 3.40%로 중국보다는 약 10%가 낫다. 인민대중은 공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각양각색의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엄히 책벌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비율은 1할을 넘는다. 이것은 중국 국유재산의 유실이 큰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해사범의 경우, 한국에서는 16.00%로 중국의 8.63%보다 거의 갑절이나 높다. 이것은 중국의 어떤 공업이 한국에 뒤졌고 뒤늦게 공장을 세웠으며 남의 교훈을 명심하여 “세가지 폐해”를 잘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대비는 현실에 부합될 것이다.

10. 중국인의 이상형 법관

공안·검찰·법원의 인원중에서 근래 사법관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어떤 사법관이 이상적인가?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통일적인 인식표준이 없었다. 《사법관법》은 조사가 끝난 후에 공포되었던 것이다.

설문에서 제기한 “아래의 4쌍의 사법관 중 각 쌍의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음).⁹⁾

9) 田中成明, “일본인의 법의식과 그 연구의 현상태”, 法社會學, 1983, 37面.

항 목	중 국 비 율	일 본
① 머리가 명석	태도가 부드럽다	49.91 : 17.12
② 위엄이 있다	친절하다	31.29 : 35.88
③ 지식면이 넓다	전문지식이 있다	32.19 : 34.98
④ 고급학력	경험이 많다	12.31 : 54.73

일본의 ①은 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00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두항의 합계가 100이 안되는 것은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학력과 경험의 선택에서 경험중시가 일본과 비슷하다. 경험이 많은 사법관이 더 환영을 받고 있다. 둘째, 중국인은 머리가 명석한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은 사업효율과 관련된다. 일본의 경우는 “태도가 부드러운”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도 위엄이 있는 것 보다는 친절한 편에 치우치며 중국의 경우는 사법관의 전문지식을 크게 보나 일본사람들은 지식면이 넓은 쪽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법원의 판결이 공정한가”라는 물음에는 “공정하다”가 32.82%, “대체로 공정하다”가 60.99%, “편파적이다”가 2.16%,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가 1.03%이다.

“무엇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물음에는 “권력이 재판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36.37%, “금전을 쓰면 절대적인 영향이 미친다”가 29.90%였다. 이것은 권력이 재력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11. 헌법을 제외하고는 경제에 관한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귀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물음에는

- | | | |
|------------|------|--------|
| ① 민사에 관한 법 | 121명 | 8.41% |
| ② 형사에 관한 법 | 240명 | 16.69% |
| ③ 경제에 관한 법 | 436명 | 30.32% |
| ④ 행정에 관한 법 | 69명 | 4.80% |
| ⑤ 혼인에 관한 법 | 33명 | 2.29% |
| ⑥ 헌 법 | 507명 | 35.26% |
| ⑦ 기 타 | 32명 | 2.23% |

헌법을 근본대법(기본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3할이상으로 이것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지식 보급선전과 관련된다. 둘째, 경제에 관한 법이 제2위를 점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실행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법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형사법의 비율이 민사법보다 잡절 높은 것은 중국인이 보통 “형법을 중요시하고 민법을 경히 보는 상태”를 보여준다.

12. 현행법에 대한 평가

이미 공포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이 42.35%로 절반이 안되며, 부정적인 대답이 32.68%, 기타가 24.97%이다. 대중은 “법이 있어도 법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법이 집행되어도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하여도 별로 추구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다.

법이 있어도 참답게 집행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과 같으며 심지어 법이 없기보다도 그 영향이 더욱 나쁠 수가 있다. 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법이 있은 후에도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법에 대한 실망만을 느낄 뿐이다. 법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결국 법의식이 희박해지고 법이란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니,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

중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에 대한 평가를 일본과 비교하여 보았다.

항 목	중 국	일 본
너무 엄하다	25명 1.74%	1.30%
좀 엄하다	68명 4.73%	4.50%
적당하다	641명 44.58%	31.50%
너무 경하다	507명 35.26%	18.70%
기 타	197명 13.70%	43.90%

“너무 경하다”가 “좀 엄하다”보다 30%나 높은 것은 유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너무 엄하다”는 1.74%로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국에서는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일본의 경우보다는 13%가 높다.

“지금 중국이 범죄자들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나치게 존중을 받는다	138명	9.60%
② 존중을 받는다	807명	56.12%
③ 존중을 받지 못한다	342명	23.78%
④ 엄중한 침해를 받고 있다	40명	2.78%
⑤ 기타	111명	7.72%

일본의 경우, “존중을 받는다”는 39.90%로, 중국보다 16% 낮으며, “존중을 받지 못한다”가 21.50%로,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 “지나치게 존중을 받는다”는 일본이 7.3%이고, 중국이 9.60%로 오히려 약간 높다. “엄중한 침해를 받는다”는 일본이 1.70%, 중국이 2.78%로 역시 중국이 약간 높다.

V. 몇 가지 결론

사회주의의 법의식은 사회주의 정신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법의식을 높히는 것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서 적극적인 추진작용을 낳는다. 동시에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은 법의식을 높히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추진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작용하는 범위는 서로 다르다. 법의식은 주로 그 나라의 입법·사법·행정활동에서 중요한 작용을 낳는다. 그 주요한 표현은 :

1. 법의식은 입법을 전개하고 완성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법의식은 국가가 법률규범을 제정하는 직접적인 근원의 하나로 된다. 법에 관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요구는 우선 법의식에 반영되며 그 법의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낡은 법을 폐지하는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입법과정에서 대중노선을 따르고 대중의 법의식을 살피며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기관 구성인원의 법의식은 더욱이 특별한 중

요성을 띠고 있다. 법률의 입법·개법·폐법은 이 사람들의 법의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법의식을 양성하고 제고하는 것은 각별히 중요한 일이다.

2. 법의식은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필요한 인소다.

법의식은 중국의 공무원, 특히 사법인원이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에 올바르게 법의 규범을 적용하고, 법률의 관철과 집행을 보증하는 필요한 인소의 하나이다. 사법인원은 높은 사회주의 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각종 복잡한 사건을 타당히 처리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3. 법의식은 공민이 법을 잘 지키는 기본적인 담보이다.

사회주의 법률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공민의 법의식을 높혀야만 그들은 진정으로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어떤 행위가 비합법적인가를 알게 되며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나라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나라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 위법행위와 투쟁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제선전과 교육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법의식이 회박하며 가족이 죄를 범했을 때에 자수하도록 하여 경한 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도망치게 내버려두어 결국은 엄한 처벌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법의식의 제고와 양성은 공민이 법을 잘 지키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일로 된다.

사회생활에서 하층으로부터 상층까지 모두 “법이 있는 이상 법에 의탁할 수 있고(有法可依) 법이 있는 이상 반드시 법을 죽어야 하며(有法必依) 법의 집행은 엄격하여야 하고(執法必嚴) 위법의 경우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違法必究)”는 방침을 참답게 관철하여야만 법의식의 양성과 제고를 위하여 좋은 사회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사업인원들의 할 일이란 결국 법을 집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률을 잘 배우고 자신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은 특수한 의의가 있

다. 중앙서기처 성원들의 법지식학습은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누구나 법지식학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3·5(1996~2000)” 법지식보급이 시작된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잘 융합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히는 것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법학교육
은 법의식의 양성과 제고의 견지에서 보아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각급·
각종 유형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법제과정은 튼튼한 기초위에서 점차적인 질적 제
고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중학교의 “법률상식”과정은 시급히 회복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경험과 교훈이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발달은 법학연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법학연구가 법의식의 제고에 미치는 작용도 무시할 수 없
는 것이다.